




## 청 원 요 지 서

접 수 일	'99. 9. 8	청원번호	1
청 원 인	주 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6동 142-2 대흥연립 가동 206호	
	성 명	서 상 호	
소개의원	배 기 한		
소관위원회	행정위원회		
건 명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개정		

### 요 지

영등포구청소속 고용직공무원중 지방지도원의 정년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제5조의 별표1규정에 근무상한 연령이 52세로 되어있어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의 정년인 57세에 비하여 너무낮게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각 구청별로 정년연령이 다르게 되어있어 형편에 맞지않는다고 판단되어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근무하는 고용직공무원인 지도원에 대하여 정년을 57세로 연장하여 줄 것을 요구한 청원임.

# 청원요지서

접수년월일	99. 9. 8 (주) 14:30	접수번호	
청원인	주소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우성(아)502-604	
	성명	노상복 (지도원) 	
대표자	주소	영등포구청 지방고용직 공무원, 지도원	
	성명	서상호 <small>사 834-4800 외 866-8285</small> 	
청원인 명수	영등포구 지방직 공무원 지도원 110명의 (<math>2,500</math>)명		
소개의원	구의회 의원 배기환 		
소관위원회	행정위원회		
건명	서울시 영등포구 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개정		

## 요지

영등포구청 소속 고용직공무원 중 지방지도원의 정년이 52세로 규정되어 있어, 6급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의 57세 정년과 비교하여 볼 때 현격한 차이가 있어 형평성에 있어 불합리하고, 또한 행정자치부의 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개정표준안에서도 고용직공무원의 정년을 57세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현행 52세로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를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과의 형평에 맞도록 개정하여 고용직공무원의 정년을 57세로 연장할 것을 청원하고자 함.

1949. 9. 10 .


수 신: 영등포 구의회 의장  
제 목: 서울시 영등포구 구지방 고용직 공무원 인사관리조례개정

위의 청원을 지방자치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유 첨: 청원서 3부 끝.

청 원 자(대표)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구로6동 142-2호 대

성 명: 서 상호  홍가 206호

소개의원(대표) 배 기



목 차

I. 자치노조 요구안

II. 기능직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

1. 관련 법률
2. 경과
3. 자치노조의 요구

III. 정년연장

1. 각 자치구청별 고용직공무원정년현황
2. 행정자치부 표준안
3. 민간부문 정년현황
4. 현 정년의 부당성
5. 자치노조의 요구

I. 자치노조의 요구안

○ 공직사회활성화대책에 고용직공무원의 기능직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을 포함시켜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며,

○ 특별임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고용직공무원의 52세 정년을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 및 민간부문 정년평균과의 형평성에 맞게 57세로 즉시 연장해 줄 것.

## Ⅱ. 기능직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

### 1. 관련 법률

#### ○ 지방공무원임용령 부칙(89.5.10)

제2조 (기능직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재직중인 1종 및 2종 지방고용직공무원(방법원을 제외한다)중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임용요건을 구비한 자는 당해 기관의 직제개정후 각각 해당분야의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한다. 다만,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임용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지방고용직공무원은 당해 지방고용직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임용요건을 구비한 때에 특별임용한다.

### 2. 경과

○ 1989년 고용직공무원의 기능직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이 실시됨에 따라 당시 방법원을 제외한 거의 모든 고용직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됨.

○ 89년 당시 방법원의 소속은 각 자치단체소속이었으나 경찰서에 파견되어 방법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음.

○ 그러나, 방법원 전부가 95년 이후 점차 각 자치구청으로 복귀하여, 현재 경찰서로 파견되어 있는 방법원은 없음.

○ 또한 각 자치구청에서는 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를 개정하여 직명을 방법원에서 지도원으로 변경하여 현재 약 2,800여명이 근무하고 있음.

### 3. 자치노조의 요구

○ 지방공무원법 부칙 제2조에 근거하여 모든 고용직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되었으나 지도원만 특별임용을 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 불평등한 정책임.

○ 또한, 7월 6일 당정협의회에서 합의된 「공직사회활성화대책」에서 비공채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으로의 특채와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대규모 승진 등 여러 가지 사기진작방안을 추진키로 하였음.

○ 그러나, 공직사회의 제일 밑바닥에서 온갖 험한 일을 전담하고 있으면서도 신분만 공무원이지 정말 형편없는 처우를 받고 있는 2,800여명에 불과한 고용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사기진작방안도 제시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정책임.

○ 89년 당시 방범원 신분으로 인해 특별임용제외되었지만 이제는 지도원으로 신분이 바뀌어 특별임용자격을 구비하고 있는 만큼 지방공무원법 부칙 제2조의 단서조항에 근거하여 기능직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이 조속한 시일내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요구함.

### Ⅲ. 정년연장

#### 1. 각 자치구청별 고용직공무원정년연장

○ 출처는 각 자치구청의 「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 정년평균은 53.3세이며, 25개구청 중 11개구청이 52세, 8개구청이 53세, 2개구청이 55세이며, 56세가 1, 57세는 2, 58세가 1개구청에 불과함.

구 청	정 년	구 청	정 년	구 청	정 년
서초구청	52	은평구청	53	강북구청	52
성북구청	53	도봉구청	53	노원구청	57
마포구청	52	동대문구청	52	강남구청	52
강서구청	53	양천구청	53	용산구청	57
강동구청	55	금천구청	52	구로구청	55
관악구청	52	동작구청	52	광진구청	56
종로구청	53	서대문구청	52	중구청	58
중랑구청	53	성동구청	52	송파구청	53
영등포구청	52				



2. 행정자치부 조례개정표준안

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

(1998. 9.17, 행정자치부 운영12100-450)

현 행			개 정 안		
[별 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직종·직명 및 근무상한연령표			[별 표] ----- -----		
구 분	1종	경노무	-----	-----	-----
직 명	지도원	사, 환	-----	-----	-----
근무상한연령	58세	58세	-----	57세	57세
비고 : (생 략)			비고 : (현행과 같음)		

3. 민간부문 정년연령

○ 민간부문 정년 연령의 평균은 56.8세임.

○ 비제조업(57.2세), 대기업(57세)이 상대적으로 정년 연령이 높음. 나이별로는 55세-58세 사이에 90%가 분포하고 있고, 60세 이상은 8.6% 정도에 그치고 있음.

4. 현 정년의 부당성

○ 헌법 제10조와 제34조는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34조에서는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그러나 정년을 매우 낮게 정함으로써 한명의 국민이자 직업상 공무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할 정부가 그 의무를 포기한 것임.

○ 또한 50대초반의 연령은 사회 및 가정에서 자녀부양 등 가장 책임을 많이 부담해야 하는 시기임과 동시에 50세 초반에 퇴직할 경우 새로운 직업을 구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사회의 현실임.

○ 각 구청별로 정년이 서로 다르게 정해져 있음에 따라 어느 구청 소속이냐에 따라 정년퇴직을 52세에 한다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며, 심각한 사회적 차별이라고도 할 수 있음.

○ 일부구청에서는 재정부족의 이유를 들고 있으나 각 구청별로 고용직공무원은 100명내외로 인건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으며, 57세로 되어 있는 구청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그리 높지 않은 구청이라는 점에서 구청측의 재정부족이유는 합리성이 전혀 없음.

#### 5. 자치노조의 요구

○ 위 항과 같이 민간부문 평균 정년 56.8세에도 크게 못미치며, 행정자치부의 정년표준안 57세에도 무려 5년이나 단축되어 있는 고용직공무원의 52세 정년은 매우 불합리하므로

○ 따라서 관련 조례를 즉시 개정하여 모든 고용직공무원의 정년을 구청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57세로 연장할 것을 요구함.

○ 또한 조례개정에는 시일이 걸리므로 올해 9월 및 12월에 52세 정년으로 인해 퇴직해야 되는 사람의 경우 일시적으로 퇴직을 유보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함.

## 현 정년의 부당성

### 1. 불합리한 구조조정

○ 정부는 IMF이후 강도높은 행정개혁을 천명하였으며, 행정개혁방안의 일환으로 전체 공무원의 30%에 해당하는 인원을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음.

○ 그 이후 1단계와 현재 2단계 구조조정방안을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각 자치구는 실시하고 있으며, 강도높은 인원감축이 실시되고 있음.

○ 인원감축방안으로 98년 2월 정부는 위헌시비를 무릎쓰고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하여 직권면직(정리해고)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직권면직 대상자는 우선 보직을 박탈하여 인력풀(POOL)로 발령낸 후 1단계 인원감축 대상자의 경우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보직을 받지 못하는 경우 직권면직하고, 2단계 인원감축 대상자의 경우 2001년까지 직권면직할 예정임.(99.8.31일 위 내용의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 지난해부터의 강도높은 인원감축으로 인해 98년 9월부터 99년 8월 19일까지 서울시 산하(자치구 포함)에서 퇴직한 공무원은 4,526명에 달하고 있음.

○ 그러나,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직까지 지방공무원 중 직권면직된 공무원은 없으며, 지난 1년사이 퇴직한 공무원 수 4,526명은 서울시 전체 1단계 인원감축목표인 6,000명의 75.4%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서울시와 각 자치구청이 정년퇴직과 명예퇴직 등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표. 기간별 퇴직유형

구분	기간별	'97.9.1~'98.8.31	'98.9.1~'99.8.10
		합 계	소 계
	정년퇴직	768	1,489
	명예퇴직	303	1,647
	의원면직	882	1,203
	기 타	162	187
서울시	소 계	563	1,462
	정년퇴직	259	497
	명예퇴직	82	606
	의원면직	200	340
	기 타	22	19
자치구	소 계	1,552	3,064
	정년퇴직	509	992
	명예퇴직	221	1,041
	의원면직	682	863
	기 타	140	168

○ 직권면직이란 정리해고와 같은 의미로서, 직권면직으로 발생할 거센 반발 등을 피하기 위해 정년퇴직 등을 유도하고 있는바,

○ 이에 따라 6급이하 일반직·기능직공무원의 정년이 실제로 4년이 단축되었으며, 일반직·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은 지방공무원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자치구청의 권한 밖이므로

○ 각 자치구청은 인원감축 목표를 정년퇴직으로 채우기 위해 각 자치구청의 조례로 정년을 정하게 되어 있는 고용직공무원의 정년을 행정자치부의 고용직공무원의 정년지침인 57세보다 매우 낮은 52세로 정하여 인원감축이 고용직공무원 등 하위직공무원에 집중하고 있음.

○ 특히, 현재 알려진 바로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1차 구조조정시 인력풀팀에 소속되었던 인원은 99년 9월 현재 거의 원직으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

져 있으며, 유일하게 기능직공무원과 고용직공무원만이 아직까지 인력풀팅에 남아 있음.

○ 따라서, 자치구청은 인원감축을 말단하위직공무원 위주로 진행하고 있음. 이는 고통분담이라는 구조조정의 원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며, 인원감축이 매우 불합리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 2. 재정자립도와 인건비

○ 98년 서울특별시의 재정자립도는 전체 15개 광역 시도 1위를 차지하고 있음.

표. 전국 15개 시도별 재정자립도(출처 : 행정자치부, 울산 제외, 단위:%)

광역시도	재정자립도	광역시도	재정자립도
서울	98.4	부산	87.8
대구	81.5	인천	85.3
광주	72.6	대전	76.2
경기	82.0	충남	33.1
충북	41.3	전남	22.1
전북	31.0	경남	50.9
경북	34.5	강원	32.5
제주	38.1		

○ 영등포구청의 경우 99년 상반기 재정자립도 82.5%(출처:행정자치부)로 전국 각 기초지자체 중 5위로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는 매우 높은 편임.

○ 또한, 설사 재정자립도가 낮더라도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충당하는 기초지자체는 그리 많지 않아, 대부분 중앙정부의 교부금으로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으므로, 유독 고용직공무원의 정년연장에 따른 인건비와 재정자

립도를 연계하는 것은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에 더욱 어긋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3. 현재의 공무원인력과 관련하여

○ 우리나라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약 30여만명, 국가공무원 약 62만여명으로 전체 92만명 정도임.(98년 기준)

○ 이는 아래의 표에서와 같이 공무원 1인당 48.9명의 국민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서, 주요 각국과 비교해 보면 절대적으로 적은 숫자라는 것을 알 수 있음. 99년 현재는 대규모 인원감축으로 담당국민수가 더욱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됨.

표. 각국의 공무원 수 비교

(1996년 기준)

국 가 명	인구수 (만명)	전체 공무원수 (천명) <sup>1</sup>	중앙정부 공무원수(천명)		전체공무원 1인당 인구수(98)	국가공무원 1인당 인구수
			개혁전	개혁후		
미 국	26,577	18,321	2,155('93)	1,864 <sup>2</sup>	14.5	142.6
영 국	5,842	4,112	735('79)	494	14.2	118.3
캐 나 다	2,978	2,338	258('95)	213 <sup>3</sup>	12.7	139.8
호 주	1,832	1,340	150('87)	143	13.7	128.1
뉴질랜드	362	71	84('80)	33 <sup>4</sup>	50.9	109.6
일 본	12,538	4,164	-	886	30.1	141.5
한 국	4,525	926	-	577	48.9	220.7 <sup>5</sup>

1.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것임
  2. 1997년 4월 현재 기준으로 발표된 자료임.
  3. 1995~98년의 감축목표(45,000명)를 반영한 수치임.
  4. 정책기능만을 맡게 된 중앙부처의 공무원 숫자만 표시한 것이며, 독립기관(Crown Entities) 및 공기업(State-Owned Enterprises)의 종사자(민간인 신분인 경우도 있음)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1985년 총 16만 6천 명에서 1994년 24만 3천 명으로 늘어나게 됨. 이 경우 국가공무원 1인당 인구수는 14.5명임.
  5. 한국의 경우 교원·경찰의 숫자(37만 2천명)를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비교대상국의 경우 이들은 지방정부 소속임).
- 자료출처 : OECD 및 각국 통계(총무처 직무분석기획단 발간 '신정부개혁론'에서 재발췌)

○ 우리나라 공무원인력이 많지 않다는 것은 행정전문가와 학자들 또한 공감하는 것으로서, 공무원수의 절대적 감축은 결국 행정기능의 축소를 야기

할 것임.

○ 영국의 경우 인원감축을 하더라도 관리직 부문에 집중하였고, 사회복지 부문과 실제 서비스제공자의 경우 공무원수가 더 증가하였음.

○ 즉,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무조건적인 인원감축보다 인력의 활용성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활용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임.